

투자자문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제 4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대면, 유선 또는 전자방식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과 협의한 전자방식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5 조 (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증액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의성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 6 조 (투자자문수수료의 납입)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제 5 조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며, 수수료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 [별지]을 적용한다.

② 투자자문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 년으로 한다.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고객과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본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본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반환금액을 정한다.

제 8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에서 정한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9 조 (투자자문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회사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고객관리, 리서치 및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1)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준수
-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 3) 고객의 자산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 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관리
-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6) 투자자문, 리서치등간의 원활한 협력

제 10 조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

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 ②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합니다.
- ④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인지도록 한다.

제 11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 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유선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의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통지의무)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 (투자자문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3.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권유자문인력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5.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6.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1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명: (인)

회사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별지] 투자자문 계약 세부조건

1. 투자자문계약 내역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재산	원
투자자문수수료	기본수수료율: 계약재산금액의 연 % (부가세포함) (중도해지 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됨) 성과수수료율: 고객과 별도 합의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주소: 전화: 팩스 : Email:
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문담당자: 수수료납입계좌:
그 밖의 사항	중도해지수수료: